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사 인건비 보조 근거 마련〉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88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사 인건비 보조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1항 및 제4항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연욱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11.
3.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영의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학예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III. 검토의견

1.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사 인건비 보조 근거 마련 (안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 제24조는 등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학예사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학예사 인건비 운영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u>운영에</u>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 ----- ----- ----- ----- <u>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에</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른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3조¹⁾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됨.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할 수 있음.²⁾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6조제1항³⁾에 따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라 둘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수를 포함하여 개관 전까지 아래의 표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게 됨.⁴⁾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개별 요건 >

유형	박물관·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제1종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제1종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유형	박물관·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제1종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종별 구분 없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학예사를 1명 이상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학예사는 자격제도의 일종으로 그 업무에 대하여 현행법에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예사는 박물관·미술관에서 작품의 수집, 관리, 연구, 전시, 교육을 총괄하는 전문가로 통용되고,

현행법 제6조⁵⁾는 학예사를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

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⁶⁾에 합격해야 함.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3급 정학예사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일정한 경력을 갖추어 2급 정학예사, 1급 정학예사가 될 수 있음.⁷⁾

한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 자격을 갖

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④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⑤ 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⑥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준 직원의 채용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설립자의 개인 재원에 의존하여 재정이 열악한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인건비 부담을 주어 지속적인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⁸⁾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2012년부터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2026년 기준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사립미술관협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연간 박물관 학예인력 인건비로 16억 8,000만원을, 미술관 학예인력 인건비로 6억 5,3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학예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립 박물관·미술관 학예·전문인력 지원사업 예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편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8)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지만 “학예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여 학예연구 직렬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등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다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 「문학진흥법」, 「공연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⁹⁾.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입법실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9) 「문학진흥법」

제30조(등록 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공연법」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학진흥법」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등록박물관에 대한 인턴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7억 4,800만원을 지원된 바 있고, 「공연법」 제12조의5에 근거하여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인건비 12억여원을 집행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공립기관이 아닌 사립기관에 대한 포괄적 인건비 지원근거 명시는 유사 입법례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 근거에 관한 유사 입법에서도 국·공립 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 등 특수한 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에 한정하여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함.¹⁰⁾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특정운영비 항목의 지원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지원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현행법을 통한 개정안 입법취지의 달성 가능성 및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84

1-1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립박물관·사립대학박물관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박물관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운영 활성화,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07년도 ~ (단년 계속)
- 집행기관 : (사)한국박물관협회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100%)

2.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 사립대학박물관
 - * 기업 설립관, 공공기관 설립관(사실상 공립박물관) 등 제외
- 지원내용 및 조건
 - 학예인력 80명, 교육인력 80명 채용 지원
 - 학예사 1명 채용 등 박물관 등록요건을 지키고 있는 관
 -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인력 2년 이상 경력자

3. '26년 예산 산출내역

(백만원)

사업 내역	'25예산(A)	'26예산(B)	'25년 대비 변동사항
• 학예인력 지원	1,889	1,679	
	90명×1.749백만원×12월 =1,889백만원	80명×1.749백만원×12월 =1,679백만원	지원인력 감소(10명)

1-2 박물관 운영 활성화 -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등록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에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전문역량 강화 및 미술관 분야 일자리 창출, 대국민 문화서비스 질 향상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4년~)
- 집행기관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100%)

2. 사업 내용

- 학예인력 채용 지원
 - '21년 34명, '22년 31명, '23년 32명, '24년 39명, '25년 37명

3. '26년 예산 산출내역

(백만원)			
사업 내역	'25예산(A)	'26예산(B)	'25년 대비 변동사항
○ 학예인력 지원	714	653	·지원 인원 축소 (학예인력 △2명) *지출 구조조정
- 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34명×1.749백만원×12월 =714백만원	32명×1.700백만원×12월 =653백만원	